

제 874 호
1981. 12. 1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판 집 : 공 보 관 이 총 우
전 화 72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 화 725-6090

시보

차례

◎ 소례

제 1562 호 : 서울특별시종합기술시험연구소 설치조례 3

◎ 규칙

제 1940 호 : 서울특별시종합기술시험연구소사무본장규칙 7

제 250 호 (시교육위원회)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소속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8

제 251 호 (시교육위원회)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규칙중개정규칙 10

제 252 호 (시교육위원회)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지방공무원징계의
양정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13

◎ 고시

제 61 호 (용산구청고시) : '82 용산구시법가로및광고물계획정비
지구지정고시 19

<이면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 공 고

제 342 호 : 특정열 사용기자재 사용업자 정체지정취소 공고	19
제 345 호 : 공인신조 사용승인 공고	20
제 346 호 : 공인신조 사용승인 공고	22
제 347 호 : 소방용기계 기구제조업소허가 취소 공고	23
제 348 호 : 서소문구역 제 7 지구재개발사업 시행 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24

◎ 사 명

조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종합기술시험연구소 설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1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 서울특별시조례 제 1562 호

서울특별시종합기술시험연구소
설치조례

제 1조(설치목적) 이 조례는 보전 소연구법 제 1조 및 제 2조에 의한 보건연구소업무와 기타 각종 시험, 조사, 연구 및 검사업무의 집중관리로 시민생활을 보호하고 행정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종합기술시험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위치) 연구소의 위치는 시장이 따로 고시한다.

제 3조(소장) ① 연구소에 소장 1인을 두고 소장은 3급,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연구

소의 사무를 통합하여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 4조(공무원의 정원) 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 5조(하부조직) ① 소장실에 관리부, 원생화학부, 풍해미생물부, 축산물검사부, 토목시험부와 연로시험과 및 재량기검사과를 둔다.
② 관리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원생화학부장 및 풍해미생물부장은 4급 지방보건연구관으로, 축산물검사부장은 지방축산기경 또는 4급 지방수의관으로, 토목시험부장은 지방토목기정으로, 연로시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화공기자로, 재량기검사과장은 지방기계기자로 보한다.

제 6조(관리부) ① 관리부에 서무과와 경리과를 두고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서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보안, 관인판수 및 청중단속
2. 인사복무 및 직원후생
3.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예산
4. 청사관리

5. 기타 소내 다른부 및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경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회계 및 물품관리
2. 금전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25-4 제 874 호 시

3. 각종 수수료 수납

4. 각종 시험용 기자재수급 및
유지관리

5. 검체 및 시약관리

제 7 조 (위생화학부) ① 위생화학부에
약품화학과, 독극물과, 기기분석과,
식품분석과 및 식품위생과를 두고
과장은 5급 지방보전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약품화학과는 일반의 약품의 시험
분석 및 연구와 부내 타과에 속
하지 아니한 사항을 분장한다.

③ 독극물과는 마약, 독극물, 화장품,
방역약 및 위생재료등의 시험분석
및 연구를 관장한다.

④ 기기분석과는 기기장비의 관리와
특수약품, 식품등의 보존료, 잔류농
약 및 공해검사등 특수성분의 분
석 및 시험연구를 관장한다.

⑤ 식품분석과는 일반식품, 기호식품,
소미료등의 시험분석 및 연구를
관장한다.

⑥ 식품위생과는 식품첨가물, 어육면
제품, 청량음료, 주류, 유가공품과
그 용기 및 완구류의 검사와 시
험연구를 관장한다.

제 8 조 (공해미생물부) ① 공해미생물
부에 환경조사과, 대기보존과, 수질
보전과, 세균과, 폐기물과 및 조사지
도과를 두고 과장은 5급 지방보
전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대기

보 1981.12.1

보존과장과 수질보전과장은 지방
화공기과로 보할 수 있다.

② 환경조사과는 대기, 수질의 자동
측정소 운영과 대기반 자동측정소
의 운영 및 전동에 관한 검사
및 조사연구와 부내 타과에 속하
지 아니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대기보존과는 공장, 사업장의 조
업으로 인한 대기오염물, 위해가스
소음의 검사등 대기오염원에 관한
시험연구를 관장한다.

④ 수질보전과는 공장, 사업장의 조
업으로 인한 폐수 및 하천오염과
상수도, 정호수, 공업용수등 수질
전반에 대한 검사 및 시험·연구
를 관장한다.

⑤ 세균과는 각종 식품의 세균학적
검사와 식중독검사 및 바이러스등
세균의 시험 연구를 관장한다.

⑥ 폐기물과는 폐기물의 검사 및
시험 연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⑦ 조사지도과는 각구 보전소 전자
요원의 교육훈련, 보관자색출검사
및 각종 전염병균의 시험연구를
관장한다.

제 9 조 (축산물검사부) ① 축산물검사
부에 검사과, 시험과를 두고 과장
은 지방축산기과 또는 지방수의관
으로 보한다.

② 검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축검사

제 874 호 시

2. 축산물검사	
3. 부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시험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산물 및 용기의 위생시험과 사료검사	
2. 축산물작업장의 위생관리에 대한 조사연구	
3. 가축전염병의 검진 및 병성감정과 방역	
4. 가축전염병 및 인수 공통전염병에 대한 조사연구	
5. 동물약품 및 철가세의 검사	
제 10조 (토목시험부) ①토목시험부에 물리파, 토질파 및 화학파를 두고 물리과장, 토질과장은 지방토목기과로, 화학과장은 지방화공기과로 보한다.	
②물리파는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에 관한 사항과 과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분장한다.	
③토질파는 건설공사의 토질시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화학파는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유기, 무기화학 시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 11조 (연료시험과) ①연료시험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료용구의 시험에 관한 사항	

보 1981.12.1 25-5

2. 연료의 열량측정 및 화학분석	
3. 관한 사항	
4. 새연료원의 개척에 관한 사항	
5. 고압가스용기 및 연소기구의 안전도 검사	
제 12조 (제량기검사과) 제량기검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량기의 제작시험에 관한 사항	
2. 제량기의 검정검사에 관한 사항	
3. 제량기의 제작업허가에 관한 사항	
4. 제량기 생산실적 증명	
5. 제량기제작업 공장이전 허가	
6. 제량기제작업 폐업 신고	
제 13조 (직무대행)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관리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소장과 관리부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순원에 의거 해당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폐지한다.	
1. 서울특별시 보건연구소설치조례	
2. 서울특별시 축산물위생검사소 설치조례	
3. 서울특별시 토목시험소설치조례	
4. 서울특별시 연료시험소설치조례	
5. 서울특별시 제량기검정사업소 설치조례	

25-6 제 374 호 시

보, 1981.12.1

(별표)

종합기술시험연구소지방공무원정원표

직 급	정 원	내 용
1 급		
2 "		
3 "	1	보건연구관 또는 3급상당 별정직 1
4 "	5	행정직 1, 토목직 1, 수의직 1, 보건연구직 2
5 "	20	행정직 2, 토목직 2, 기계직 1, 화공직 1, 축산 또는 수의직 2, 보건연구 11, 행정 또는 화공 1
6 "	41	행정직 8, 토목직 2, 기계직 2, 화공직 2, 축산 또는 수의직 6, 보건연구직 20, 전축·기계 또는 전기직 1
7 "	68	행정직 5, 토목직 3, 기계직 3, 화공직 2, 축산 또는 수의직 26, 보건연구직 29
8 "	12	행정직 4, 기계직 5, 화공직 2
9 "	18	행정직 3, 토목직 2, 기계직 13
별 정 직	21	6급상당 (공해측정장비 기술요원) 4, 7급상당 (공해측 정기사) 9, 8급상당 (공해측정 장비관리 2, 공해측정기사 6) 8
기 능 직		
고 용 직	70	전공 2, 생난방공 1, 수위 7, 타자원 3, 청부 6, 대장정리원 7, 민원보조원 4, 운전원 12, 보조수 9, 사활 5, 소독수 1, 시험 원 9, 전달부 1, 경비원 1, 수리공 2
합 계	256	

**규
칙**

서울특별시 종합기술시험연구소
사무분장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1. 12. 1

서울특별시장 박영수

⑥ 서울특별시 규칙 제 1940 호.

서울특별시 종합기술시험
연구소 사무분장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합기술시험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계의·분장사무와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서무과) ① 서무과에 서무계 및 영선계를 두고, 서무계장은 지방정주사로, 영선계장은 지방건축기사, 지방기계기사 또는 지방전기기사로 보한다.

② 서무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무계

가. 문서, 보안 및 청중단속
나. 인사, 복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다. 기본운영 계획수립 및 조정
라. 예산안의 작성 및 감사조회
마. 교육훈련 및 당직에 관한 사항

바. 차량관리

사. 청내 후생시설의 자료증명
이. 기타 다른 부과 또는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과

2. 영선계

가. 청사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나. 영조물수리공사의 대리 및 감독
다. 영조물의 전기유전, 냉난방, 금수기타 기계설비의 설치 및 수리 및 사용감독

제 3 조 (경리과) ① 경리과에 신뢰자 및 자재계를 두고, 서장은 지방정주사로 보한다.

② 경리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리계

가. 사업예산의 제출 및 결산
나. 세입, 세출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다. 물품구매계약

라. 사비자금의 관리

마. 과내의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자재계

가. 시험용물품의 수급계획 및 출납과 유지관리
나. 시험용고정자산의 관리
다. 검사, 시험 수수료의 조정 관리

25-8 제 874 호 시

보 1981.12.1

라. 경시 및 시약관리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규칙은 폐지된다.

1. 서울특별시 보건연구소 사무 분장규칙

2. 서울특별시 축산물 위생검사 소 사무분장 규칙

3. 서울특별시 재활기 센터사업 소 사무분장 규칙

4. 서울특별시 관료시험소 사무 분장규칙

5. 서울특별시 토목시험소 사무 분장규칙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소속 지방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1. 12. 1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구본서

◎ 교육규칙제 250 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소속 지방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소속 지방 공무원

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 규정"이라 한다)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수당지급신청대상자) ① 수당지급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수당지급가장 제 3 조 제 1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수당지급 신청기간 개시일 이전에 퇴직한 자는 수당지급규정부칙의 경위이외에는 수당지급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 3 조 (수당지급신청)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신청서(별지제 1호 서식)를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약만 한다. 다만 교육구청, 중학교, 국민학교, 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당해 교육구청장을 경유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 (수당지급액 기간제 산등)

①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

년퇴직 참여기간제 산은 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정년참여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2) 수당지급규정제 4조에 의한 대간첩작전 등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자에 대하여는 폐질등급에 따라 아래표에 의하여 가산지급하되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이를 치급하지 않을 수 있다.

폐질등급	가산지급배수
1급내지 4급	월봉급액의 4배
5급내지 8급	월봉급액의 3배
9급내지 12급	월봉급액의 2배
13급내지 14급	월봉급액의 1배

제 5조 (심사대상) (1) 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제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2) 수당지급 신청자가 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제 5조 (심사기준) (1) 수당지급규정제 7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결정의 우선순위는 동 규정 동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2) 수당지급규정제 7조제 2항제 1호의 질병에 이환된 정도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별표 8에 정한 바에 의한다.

(3) 수당지급규정제 7조제 2항제 2호의 장기근속공무원의 구분은 당해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적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상위 구분은 일반적 공무원이

우선한다.

(4) 교육감은 수당지급규정제 7조제 2항 및 본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각체수당지급 신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 7조 (수당지급절차) (1) 수당은 교육감이 지급한다.

(2) 교육감은 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수당의지급일, 지급장소·신청서류 기타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당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수당의지급일은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 8조 (수당수령권증명) (1) 수당지급 신청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증명한다.

(2)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을 경우의 수당지급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 9조 (수당지급증명) 수당지급증명일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한 대체 12월 1일로 한다.

제 10조 (신사상황 및 지급일보고) (1) 교육감은 수당지급신청상황(별지 제 2호서식)을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3일이내에 수당지급결과(별지 제 3호서식)는 지급일로부터 7일이내에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8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5-10 제 874 호

시

보 1931.12.1

(별지제 1호서식)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① 소속		② 제 급 (등급)		③ 성명 한글 한자()	④ 주민등록 번호
⑤ 본적 (주소)					
⑥ 생년월일	.. .	⑦ 근속년수	년 개월	⑧ 정년일	년 월 일
⑨ 퇴직사유	○ 일반퇴직 ○ 상병퇴직 (폐질증도 등급)			⑩ 정년잔여 기간	년 개월
⑪ 퇴직하고자 하는 날 (퇴직일)	년 월 일	⑫ 수당청구액			
⑬ 수당지급 기간	년 개월	⑭ 수당청구액 산출내역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을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진단서 (상병퇴직자의 경우) 1부. 2. 기관장 확인서 (대간첩작전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폐질사태로 된자의 경우) 1부.					
19 . . . 신청인 ⑮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소속기관의 장 직인 귀하					
⑯ 확인 연금담당자		첨부 : 연금기록카드사본 (원본대조) 1부			
위 사실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19 . . . 교육구청장 직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귀하					

제 874 호 시

보 1981.12.1 25-11

수당지급신청서작성요령		로부터 ⑧의 정년일까지 계산한다. (단, 정년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한다)							
1. ⑦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수당지급신청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7. ⑯는 신청자의 퇴직당시의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의 $1/2 \times$ 수당지급규정별표의 배수 = 수당지급액							
2. ⑯는 해당사유란에 0 표하고 상병퇴직의 경우에는 폐질등급을 기재한다.		8. ⑯는 연금담당자가 서명 날인한다.							
3. ⑯은 수당지급신청계시일로부터 정년일까지 계산한다.		9.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국·공립종합병원장이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⑯은 수당지급신청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3개월내이어야 하되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한 이내이어야 한다.		10. 수당지급 신청서를 접수하면 소속기관의 연금담당자와 인사담당자는 해당사실을 확인한 후 우측상단 적단한 여백에 서명 날인한다.							
5. ⑯는 ⑯의 산출결과를 기재한다.									
6. ⑯은 ⑯의 퇴직하고자 하는 시기									

(별지 제 2 호서식)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지급신청 상황보고

1. 연령별

연령별 직급별	제	60세	59세	58세	57세	-	-	-
제								
(예)								
지방세기관								
지방행정사무관								

25-12 제 874 호 시

보 1981.12.1

2. 근속 년수별

근속년수별 직급별	제	20년	21년	22년	23년	-	-	-
제								

(별지 제 3 호 서식)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결과보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수당 지급일	수당 지급액	명예 퇴직일	비고

* 비고란은 명예퇴직으로 특별 승진된 여부를 기록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특별승진으로 퇴직된 자는 별지로 작성

제 874 호 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중 개정규칙을 이
에 공포한다.

1981. 12. 1.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 구분서

◎ 교육규칙 제 251 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행정권한의 위
임에 관한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 6 조 (보조기관에 위임하는 사항)

제 1 항 제 1 호 중 "4 급이하"를 "6
급이하"로 한다.

제 7 조 (교육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 1 호 내지 제 3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 8 호 중 "5 급"을 "8, 9
급"으로 하며, 제 9 호 내지 제 14 호
중 "4 급"을 "6, 7 급"으로
한다.

1. 공립의 유치원, 국민학교, 공민
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와 과종학교 의료원 (중학교 교장
제외)의 관내 전보

2. 제 1 호 각급학교의 교원 (중학
교 교장제외)의 임지 지정

보 1981. 12. 1 25-3

3. 제 1 호 각급학교 교원 (중학교
교장제외) 휴직 및 복직

부 칙 (8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해
되, 제 7 조제 1 호 내지 제 3 호는
82.1.1 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지방공무원 정
체의 양정에 관한 규칙 중 개정규칙
을 이에 공포한다.

1981. 12. 1.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 구분서

◎ 교육규칙 제 252 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지방공무원
정체의 양정에 관한 규칙 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지방공무원 정체
의 양정에 관한 규칙 중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 1 조 내지 제 5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
원 정체 및 소청 규정제 3 조의 규
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 (이하 "공
무원"이라 한다)의 정체 양정의 기
준과 기준·감경 사유 등을 정함으로써 정
체양정의 형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5-14 제 874 호 시

보 1981.12.1

제 2 조 (징계양정의 기준) ① 서울특별시 교육인사위원회 (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실제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증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선의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 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서 공무 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 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서울시교육위원회의 중점 정화 대상 비위를 엄중문재하여야 한다.

제 3 조 (비위행위자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동일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위의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징계사건이나 행위당시의 여전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

라고 인정되는 사건 및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 4 조 (징계의 감경)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공적에서 제외하며, 행위당시의 여전 기타 사회통념상 거절을 기대하거나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향응수수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서 중점 정화대상으로 지정된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 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율 받은 공적

2. 정부포장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6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은 장관 (장관급 이상의 승양행정기관의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 규정 (내통령령 제 6971호)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제 5조 (징계의 가중) 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 이상의 비위가 결합될 경우에는 그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광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 6조 내지 제 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6조 (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인사위원회가 제 4조 및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이유단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견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를 청을 권고한다"라 기재한다.

제 7조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결 기재요령)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인징계 및 소정규정 제2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징계의결 요구서에 상재의결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와 그 이유를 제 2조 및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형기준 및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분석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 8조 (징계의결 요구시 확인사항)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의결서를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고속위원회 중점 정화대상으로 지정된 비위 해당여부와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유무 등을 기재한 별지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별표 1)를 (별표 1)로 하여 별지와 같이 (별표 2), (별표 3), (별지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81.12.1)

이 규칙은 공포일 날로부터 시행한다.

25-16 제 874 호 시

보 1981.12.1

(별표 1)

장 계 양 정 기 준

(제 2 조관례)

비위의도 및 파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도가 중하고, 고의 가 있는 경 우	비위의도가 중하고, 중과 실이거나, 비 위의도가 경 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도가 중하고 경과 실이거나, 비 위의도가 경 하고 중파실 인 경우	비위의도가 경하고, 경 파실인 경 우
1. 성실의무위반				
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 면	해 임	정직 - 감봉	전 책
나. 기타	파면 - 해임	정 직	감 봉	전 책
2. 복종의무위반	파 면	해 임	정직 - 감봉	전 책
3. 직장이탈금지위반	파면 - 해임	정 직	감 봉	전 책
4. 친절공정의무위반	파면 - 해임	정 직	감 봉	전 책
5. 비밀엄수의무위반	파 면	해 임	정 직	감봉 - 전책
6. 청렴의무위반	파 면	해 임	정 직	감봉 - 전책
7. 품위유지의무위반	파면 - 해임	정 직	감 봉	전 책
8. 영리업무 및 겸 직금지의무위반	파면 - 해임	정 직	감 봉	전 책
9. 집단행위금지위반	파면 - 해임	정 직	감 봉	전 책

제 374 호 시

보 1931.12.1 25-17

비위 행위자 감독자에 대한 문책 기준

(제 3 조 관계)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 행위자 (담당자)	직장 감독자	차장감독자	최고 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 결정사항				
· 중요사항 (고도 의 정책사항)	4	3	2	1
· 일반적인 사항	3	1	2	4
○ 단순·반복업무				
· 중요사항	1	2	3	4
· 경미사항	1	2	3	
○ 단독행위				

※ 1, 2, 3, 4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별표 3)

정 계 양 정 감 경 기 준

(제 4 조 관계)

제 2조제 1항 및 제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계양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된 정계양정
파 면	해 일
해 임	성 직
정 직	감 봉
감 봉	견 책
견 책	불 문 (경고)

25-18 제 874 호 시

보 1981.12.1

(별지서식)

확 인 서

1. 경제협의자의 인적사항

가. 소속 및 직위

(1) 현 재

(2) 협의 당시

나. 직 급

다. 성 명 (한글) (한자)

2. 제 2조제 2항 해당 비위업무

가. 금품 및 향응 수수관계 : (해당됨, 해당없음)

나. 증점 청화대상 비위관계 : (해당됨, 해당없음)

3. 제 4조 해당 공직과 경제유무

공 적 사 항			경济사항 (경고조치포함)		
포상일자	포상의종류	시행청	일자	종 류	발령청
●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실인)

경제의 결요구권자 (직 위) (관인)

제 874 호

시

보 1981.12. 1 25-19

고 시

◎ 용산구청 고시 제 61 호

'82 용산구시범가로및광고물
계획정비지구지정고시

1. 서울특별시 광고물등관리법 시행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
고물계획정비지구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한다.

2. 계획정비 지구내의 모든 광고물
은 고시일로부터 확정될때까지 신
규제시 및 변경행위를 할 수 없
다.

3. 관계도서는 용산구청 건설관리과
및 청파 1,2동, 한강로 1동 사무실
에 비치 공람한다.

1981년 11월 1일

용산구청장 강덕기

○ 계획정비지구

구	간	연	장	비	고
동양제과-서부역 (교통부앞) 용산구문배동30번지-서제동224번지상도로양면		1.9	㏊	면적	도면참고

공 고

◎ 서울특별시 공고제 342 호

· 특정열 사용기 자제시공업지정
업체지정취소공고

에 의거 아래 특정 열 사용기사제
시공업 지정 업체에 대하여 그 지
정을 취소 하였음을 등법 시행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한다.

1981.11.30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30조 규정

서울특별시장

지정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사유	조치내용	관계법규
판약제23호	주택난방공사	홍훈표	봉천동192-2	무단 전출	지정 취소	에너지이용합리화 법 제22조 1항
판약제29호	대연설비	조석구	• 산 174-61	무단 투입	"	"
판약제72호	성우설비공사	이정우	신림 706-22	"	"	"

25-20 제 874 호 시

보 1981.12. 1

● 서울특별시 공고제 345 호

제 9 조에 의거 공고한다.

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

1981.12. 1

서울특별시 공인을 아래와 같이
신조사용 승인하고 관인 규정
제 9 조 및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서울특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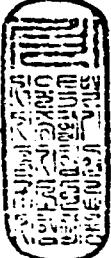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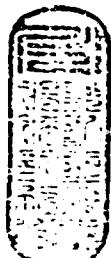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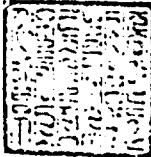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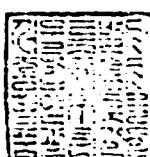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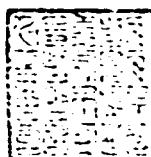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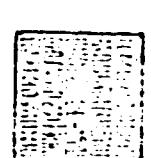
1. 공인명: 별첨
2. 사용개시일: 81.12. 1
3. 공인의 인영: 별첨

공인의인영:

인명			
공인명	서울특별시 종합기술 시험연구소장인 축산물검사부용	서울특별시 종합기술 시험연구소장인 축산물검사부용	서울특별시 종합기술 시험연구소장인 토목 시험부용
인명			
공인명	서울특별시 종합기술 시험연구소장인 연고시험과용	서울특별시 종합기술 시험연구소장인 계량 기검사과용	서울특별시 종합기술 시험연구소 계인

제 874 호 시

보 1981.12.1 25-21

인 명				
공인명	서울특별시 종합기술시험연구소 축산물 검사부 용역인	서울특별시 종합기술시험연구소 토포 기술부 용역인	서울특별시 종합기술시험연구소 예료 시험과 용역인	서울특별시 종합기술시험연구소 지량기 검사과 용역인
인 명				
공인명	서울특별시 종합기술시험 연구소 장수관인	서울특별시 종합기술시험연구소 물품관리관인	서울특별시 종합기술시험연구소 분임경리관인	
인 명				
공인명	서울특별시 종합기술시험연구소 문임지출원인	서울특별시 종합기술시험연구소 세입세출의 현금 출납원인	서울특별시 종합기술시험연구소 물품 출납원인	

25-22 제 874 호 시

보 1981.12. 1

◎ 서울특별시 공고제 346 호

공인신조사용승인 공고

서울특별시 공인을 아래와 같이
신조사용 승인하고 관인규정 제9조
및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9조에
의거 공고한다.

1981.12. 1

서 울 특 별 시 장

1. 품인명: 별첨
2. 사용개시일: 81.12. 1
3. 품인의 인영: 별첨

인 영	
공인명	서울특별시 장묘사업소 분임경리관인
인 영	
공인의 인영	
공인명	서울특별시 장묘사업소 물품관리관인
인 영	
공인명	서울특별시 장묘사업소 분임지 출원인
인 영	
공인명	서울특별시 장묘사업소 물품출납원인
서울특별시 장묘사업 소장 직인 및 계인	

제 874 호

시

보 1981.12.1 25-23

인 영			
공인명	서울특별시장묘사업소장 인	서울특별시장묘사업소 분임경리관 인	서울특별시장묘사업소 불금관리관 인
인 영			
공인명	서울특별시장묘사업소 분임지출원 인	서울특별시장묘사업소 물품출납원 인	서울특별시장묘사업소 제 인
<p>◎ 서울특별시 공고 제 347 호 소방용기체기구제조업소허가취소공고</p> <p>소방법 제 37 조 제 2 항 규정에 의</p>			<p>거 다음 소방용기체기구 제조업소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 처분하였음을 공고한다.</p> <p>1981. 12. 2.</p> <p>서 울 특 별 시 장</p>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허가사항
			번호 일자 품목
(주) 일영 전자	영등포구 도림 동 195-5	정휘탁	서울 제 1-5 11.23 자동화재 탐지기
			소방법 제 37 조 제 2 항 규정 위반
			81. 12.2

2141

25-24 제 874 호

시

보 1981.12.1

◎ 서울특별시공고제 348 호

서소문구역 제7지구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제 428호(78.12.29)로 구역지정되고, 등고시 제329호(81.8.27)로 사업계획결정된 서소문구역 제7지구에 내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도시재개발법 제15조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공람공고한다.
2. 관계서류는 도시계획국 재개발과에 비치하고 공람에 공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별도 통보할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1981. 12. 4

서울특별시장

- 공 람 개 요
- 가. 사업명칭 : 서소문구역 제7지구 재개발사업
- 나. 시행위치 : 중구 서소문동 75-22 외 30필지
- 다. 시행면적 : 2,691 ㎡ (814.3평)
- 대지면적 : 2,160.3 ㎡ (653.5평)
- 풍공용지시설면적 : 513.4 ㎡ (160.8평)
- 라. 건축제작 (규모 및 충별용도는 건축허가로 확정한다)

○ 건축면적 : 약 823 ㎡ (전체율 약 38%)

○ 연면적 : 약 20,600 ㎡ (용적률 약 66.8%)

○ 용도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 총 수 : 지상 17층, 지하 4층

마. 시행예정자

중구 충무로 4가 12-1
유원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최효석)

바. 규약및 사업시행계획서 : 별첨
(생략)

사. 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2년

아.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자.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720-4627)

사 령

◎ 1981년 12월 1일자 봉지 490호

보건연구소장 박성배
지방보건연구관(3급)

종합기술시험연구소장

봉지 491호

보건연구소 이하봉
지방보건연구관(4급)

종합기술시험연구소 위생화학부장

제 874 호

시

보 1981.12.1 25-25

보전연구소 박상현
지방보전연구관(4급)

종합기술시험연구소 공해미생물부장

축산물위생검사소
지방수의관(4급) 최원식

종합기술시험연구소 축산물검사부장

토목시험소장 서무전
지방토목기정

종합기술시험연구소 토목시험부장

경제 500 호

동 철

강남구토목과
지방토목기사

종합기술시험연구소

구로구수도공사과
지방토목기사 권대근

강남구 파견

(81.12.1-82.5.31)

경제 501 호

시립대학 유향기
지방행정서기

중앙교육연수원 전출을 명함.

성동구자양 2동 윤근재
지방행정서기

제주도 전출을 명함.

서울특별시 강